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

(노동부 고시 제2002-15호)

2002. 7. 22

개 정 전	현 재
<p>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</p> <p>제6조(수급인등의 의무)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사용기준)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②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(감리자를 포함한다)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(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)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·팀 이상의 별도조직(이하 “안전전담부서”라 한다)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(1.1~12.31)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</p> <p>제6조(수급인등의 의무)<삭제></p> <p>제7조(사용기준)①—————. 다만,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(감리자를 포함한다)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③—————.</p> <p>④—————.</p> <p>⑤—————.</p> <p>부 칙(02. 7. 22)</p> <p>①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기술지도대가에 관한 적용례)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.</p>

개정 전			현 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2</p> <p>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항목</th> <th>사용내역</th> <th>사용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-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<당서조항 삽입> 안전보조원(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등을 겸함)의 인건비 ※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 • 낙하,비래물 보호용 시설비-낙하물방지망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 안전 시설비 등</td> <td>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리프트 무선 호출기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•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,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의, 터널작업·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, 조임대(각반) <p><신설>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<당서조항 삽입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※ 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/td> <td>안전관리비 총액의 10%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항목	사용내역	사용기준	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-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<당서조항 삽입> 안전보조원(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등을 겸함)의 인건비 ※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 • 낙하,비래물 보호용 시설비-낙하물방지망 		2 안전 시설비 등	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리프트 무선 호출기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•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,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		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의, 터널작업·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, 조임대(각반) <p><신설></p>		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<당서조항 삽입> 		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※ 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		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안전관리비 총액의 10% 이하	<p>별표2</p> <p>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항목</th> <th>사용내역</th> <th>사용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. • 안전보조원(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)의 인건비 ※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처리원, 사무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 • 낙하,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 안전 시설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• 가설전선의 피복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전선차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• 리프트 무선 호출기 · 자동운전장치 •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빙 또는 제설비용 • 기계·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• 안전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•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•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•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, 카메라, 컴퓨터,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임대(각반), 우의, 터널작업·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•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<p>•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</p> <p>※ 교육장 대기구입비는 제외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※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·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·교육,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• 작업중 휴한·휴식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•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•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</td> <td>안전관리비 총액의 20%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항목	사용내역	사용기준	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. • 안전보조원(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)의 인건비 ※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처리원, 사무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 • 낙하,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		2 안전 시설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• 가설전선의 피복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전선차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• 리프트 무선 호출기 · 자동운전장치 •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빙 또는 제설비용 • 기계·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• 안전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•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•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•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, 카메라, 컴퓨터,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		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임대(각반), 우의, 터널작업·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•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<p>•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</p> <p>※ 교육장 대기구입비는 제외</p>		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※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		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·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·교육,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• 작업중 휴한·휴식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•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•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	안전관리비 총액의 20% 이하
항목	사용내역	사용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-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<당서조항 삽입> 안전보조원(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등을 겸함)의 인건비 ※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 • 낙하,비래물 보호용 시설비-낙하물방지망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 안전 시설비 등	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리프트 무선 호출기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•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,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의, 터널작업·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, 조임대(각반) <p><신설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<당서조항 삽입>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※ 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안전관리비 총액의 1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목	사용내역	사용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. • 안전보조원(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)의 인건비 ※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처리원, 사무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 • 낙하,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 안전 시설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• 가설전선의 피복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전선차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• 리프트 무선 호출기 · 자동운전장치 •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빙 또는 제설비용 • 기계·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• 안전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•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•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•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, 카메라, 컴퓨터,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임대(각반), 우의, 터널작업·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•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<p>•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</p> <p>※ 교육장 대기구입비는 제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※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·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·교육,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• 작업중 휴한·휴식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•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•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	안전관리비 총액의 20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주)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.</p>			<p>주)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4 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사금액</th> <th>구분</th> <th>기술지도 대가</th> <th>기술지도 횡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0억원 미만</td> <td></td> <td>1회당 142,000원</td> <td rowspan="3">공사기간 중 월 1회</td> </tr> <tr> <td>40 ~ 100억원 미만</td> <td></td> <td>1회당 186,000원</td> </tr> <tr> <td>100 ~ 150억원 미만</td> <td></td> <td>1회당 224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공사금액	구분	기술지도 대가	기술지도 횡수	40억원 미만		1회당 142,000원	공사기간 중 월 1회	40 ~ 100억원 미만		1회당 186,000원	100 ~ 150억원 미만		1회당 224,000원	<p>별표4 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사금액</th> <th>구분</th> <th>기술지도 대가</th> <th>기술지도 횡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0억원 미만</td> <td></td> <td>1회당 155,000원</td> <td rowspan="3">공사기간 중 월 1회</td> </tr> <tr> <td>40 ~ 100억원 미만</td> <td></td> <td>1회당 209,000원</td> </tr> <tr> <td>100 ~ 150억원 미만</td> <td></td> <td>1회당 246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공사금액	구분	기술지도 대가	기술지도 횡수	40억원 미만		1회당 155,000원	공사기간 중 월 1회	40 ~ 100억원 미만		1회당 209,000원	100 ~ 150억원 미만		1회당 246,000원											
공사금액	구분	기술지도 대가	기술지도 횡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억원 미만		1회당 142,000원	공사기간 중 월 1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 ~ 100억원 미만		1회당 18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 ~ 150억원 미만		1회당 224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사금액	구분	기술지도 대가	기술지도 횡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억원 미만		1회당 155,000원	공사기간 중 월 1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 ~ 100억원 미만		1회당 209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 ~ 150억원 미만		1회당 24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